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4
----------	-----

제출년월일 : 2024년 11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로 마련된 자치법규 개선 권고안에 따라 부패 취약 요인을 보완하고, 변화한 환경에 맞는 표창 수요를 반영하여 포상의 공정성·영예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북구민대상 심사 부문 및 추천 요건 변경(안 제8조)

나. 포상절차 변경(안 제12조)

다. 포상취소 신설(안 제1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상훈법

2) 정부표창규정

3)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나. 합 의

1) 자치행정과 : 성북구민대상 관련 사항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 2024. 9. 19. ~ 2024. 10. 10.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4)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6) 법제심사 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청소년부문”을 “청소년 부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10명”을 “30명”으로 한다.

1. 지역사회 발전 부문
2. 선행·봉사 부문
3. 환경·안전 부문
4. 문화·체육 부문

제12조제2항 본문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포상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성북구민대상) ① 성북구민 대상은 5개 부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성북구민대상) ① ----- ----- -----.
1. <u>지역사회발전 · 부문</u>	1. <u>지역사회 발전 부문</u>
2. <u>선행봉사부문</u>	2. <u>선행·봉사 부문</u>
3. <u>미풍양속부문</u>	3. <u>환경·안전 부문</u>
4. <u>문화, 체육부문</u>	4. <u>문화·체육 부문</u>
5. 모범 <u>청소년부문</u>	5. --- <u>청소년 부문</u>
② 성북구민대상은 시상일 기준 성북구에 <u>3년</u> 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부문별 수상인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u>10명</u> 이상의 주민이 연명으로 관할 동장을 거쳐 추천하거나 관계기관장(동장, 파출소장, 학교장 등) 및 구청 국장 이상 간부가 추천한다.	② ----- ----- <u>5년</u> ----- ----- ----- ----- ----- <u>30명</u> -----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절차) ① (생 략)	제12조(포상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표창장, 성북구민대상, 자랑스러운 성북인상 및 유공공무원 표창은 <u>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u>	② ----- ----- ----- <u>공적심사위원회</u> -----

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2(포상취소) ① 포상권자

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
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포상 심사 및 수여와 관련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정리가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장 박 정 훈